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연월일	2026. . . (제 회)	

군 표 창 규 정 일 부 개 정 령 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강신철 (국방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6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군표창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가. 현행 「군 표창 규정」은 표창 취소 사유가 ‘공적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’로 한정되어 있어, 국가안전보장 관련 범죄나 중대 비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 대한 취소 근거가 부재함. 또한 취소의 절차, 공표, 환수 등 구체적인 행정적 처분 근거가 명문화되어 있지 않음.

나. 반면, 유사 대통령령인 「정부표창규정(대통령령)」은 표창의 취소 사유를 상위법령인 「상훈법」에 근거하여 명시하고 있으며, 취소에 따른 심사, 공표, 환수 등 실효적인 행정처분의 근거를 명문화하고 있음.

다. 이에 상위법령인 「상훈법」 및 유사 대통령령인 「정부표창규정」과의 법적 정합성 확보를 위해 취소 사유를 강화하고, 심사·공표·환수의 실효적 행정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군 표창의 영예성 제고와 부적격자에 대한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가. 표창 취소 사유의 확대 및 취소 절차의 신설(제14조)

나. 취소 사실의 공표 및 환수 의무화 신설(제14조의2, 제14조의3)

다.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신설(제16조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행정안전부와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12.31. ~ 12.31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군표창규정 일부개정령안

군표창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전면 개정한다.

제14조(표창의 취소) ① 표창권자는 표창을 받은 자에게 「상훈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표창을 취소한다. 다만, 우등상을 받은 자의 경우에는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표창을 취소한다.

② 표창권자는 표창을 받은 자에게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(우등상을 받은 자의 경우 같은 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)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적심사위원회 심사(같은 항 제1호의 사유를 제외한 표창 취소 사유에 대해서는 공적심사위원회를 생략할 수 있다)를 거쳐야 한다.

제14조의 2 및 제14조의 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4조의2(취소의 공표) 표창권자는 제14조에 따라 표창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대상자와 사유를 취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게재하여야 한다.

제14조의3(표창의 환수)

① 표창권자는 표창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장 및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물건·금전 등 부상(이하 “표창 등”이라 한다)을 환수하여야 한다.

② 표창이 취소된 자는 표창권자로부터 표창 등의 반환을 요구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0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.

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6조(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등)

① 표창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」 제19조1제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

1. 제10조에 따른 표창의 공적심사

2. 제14조부터 제14조의3까지의 규정에 따른 표창의 취소 및 환수

② 표창권자는 제14조부터 제14조의3까지의 규정에 따라 표창의 취소 및 환수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.

1. 「주민등록법」 제29조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주민등록표 등본·초본의 발급

2. 「주민등록법」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주민등록 사항에 관한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표창의 취소 및 환수에 관한 적용례) 제14조부터 제14조의 3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표창을 받은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. 다만, 「상훈법」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유로 인한 표창의 취소 및 환수는 표창을 받은 자가 이 영 시행 이후 같은 호에 따른 죄를 범한 경우부터 적용한다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4조 (표창의 취소) <u>표창은 이를 취소할 수 없다. 다만, 표창한 공적이 허위로 판명되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.</u>	제14조(표창의 취소) <u>① 표창권자는 표창을 받은 자에게 「상훈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표창을 취소한다. 다만, 우등상을 받은 자의 경우에는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표창을 취소한다.</u> <u>② 표창권자는 표창을 받은 자에게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(우등상을 받은 자의 경우 같은 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)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적심사위원회 심사(같은 항 제1호의 사유를 제외한 표창 취소 사유에 대해서는 공적심사위원회를 생략할 수 있다)를 거쳐야 한다.</u>
< 신 설 >	
< 신 설 >	<u>제14조 2(취소의 공표)</u> <u>표창권자는 제14조에 따라 표창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대상자와 사유를 취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게재하여야 한다.</u>

현행	개정안
< 신설 >	<u>제14조 3(표창의 환수)</u> ① 표창권자는 표창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장 및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물건·금전 등 부상(이하 “표창 등”이라 한다)을 환수하여야 한다. ② 표창이 취소된 자는 표창권자로부터 표창 등의 반환을 요구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0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.
< 신설 >	<u>제16조(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등)</u> ① 표창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」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 1. 제10조에 따른 표창의 공적심사 2. 제14조부터 제14조의3까지의 규정에 따른 표창의 취소 및 환수 ② 표창권자는 제14조부터 제14조의3까지의 규정에 따라 표창의 취소 및 환수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. 1. 「주민등록법」 제29조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주민등록표 등본·초본의 발급 2. 「주민등록법」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주민등록사항에 관한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국방부 병영정책과	
연락처	(02) 748 - 5154